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이유

-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중 각 조문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문화재 감면에 있어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조문 정리(안 제8조)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함에 있어 제목과 내용에 대한 용어 일치(안 제26조)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중 각 조문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안입니다.

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한 의견입니다.

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구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감면취지에 맞추어 건축물에 대하여도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안 제26조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제26조 본문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 내용을 감안하여 조문의 제목과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이라 생각합니다.